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6. 19.(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78
발의일자	2023.5.31.
회부일자	2023.6.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정경민 의원 외 37명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및 정관 및 예산·결산 등에 대한 도의회 보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다. 경영실적 평가에 대항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라.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협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서 및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가. 규제심사: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7.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첫째,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 둘째,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타당성 검토, 셋째, 정관 작성·변경 협의결과 및 예산·결산 등에 대한 도의회 보고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의2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규정임.
 - 도 산하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등의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

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 가. 지방직영기업
 - 나. 지방공사
 -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 안 제6조의2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규정임.

-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 도민 의견수렴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검토 결과에 대한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¹⁾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폐지·분할하는 경우에는 설립·운영하는 경우와는 달리 현행법령상 타당성 검토나 이에 대한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통·폐합 관련 규정은 미비되어 있음.

※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2.11.24.)이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1)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설립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정치적 필요 등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는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사업의 경영성과와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임.
- 행정기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인력이 한정된 만큼 산하기관이나 민간에 '위탁' 혹은 '대행'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공공기관 대행 사업은 민간위탁과 달리 별도의 검토 및 평가 절차 없이 사업을 맡길 수 있으며, 대행 사업이 임의로 다수 선정되어 개별부서 간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사업 전문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평가 역시 대행을 맡긴 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연장하는 등 예산 낭비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경영실적 평가에 대행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9조의2는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협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서 및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신설한 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및 정관 및 예산·결산 등에 대한 도의회 보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단초를 제공한다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가 「지방출자출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1.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현황 1부.

2.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현황 1부. 끝.

붙임1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현황

▣ 29개 기관(출자 3, 출연 23, 보조단체 3)

<2023. 6월 현재>

구분	기관명	직위	성명	임기	비고	
출자기관	공기업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	2021.03.09~2024.03.08	예산담당관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성조	2023.02.22~2024.02.21	관광정책과
	3 섹터	경북통상(주)	대표이사	김현규	2023.03.21.~2026.03.20	외교통상과
출연기관	의료원	포항의료원	원장	함인석	2021.10.19~2024.10.18	감염병관리과
		김천의료원	원장	정용구	2021.03.02~2024.03.01	감염병관리과
		안동의료원	원장	(공석)		감염병관리과
	재단	경북연구원	원장	유철균	2022.08.01~2025.07.31	정책기획관실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하인성	2022.11.01~2023.10.31	소재부품산업과
		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	한진관	2021.05.24~2024.05.23	바이오생명산업과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	(공석)		소재부품산업과
		경제진흥원	원장	송경창	2022.10.19~2025.10.18	기업지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세환	2021.04.01~2024.03.31	기업지원과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정종섭	2021.03.29~2024.03.28	문화예술과
	경북콘텐츠진흥원	원장	이종수	2022.10.01~2023.09.30	문화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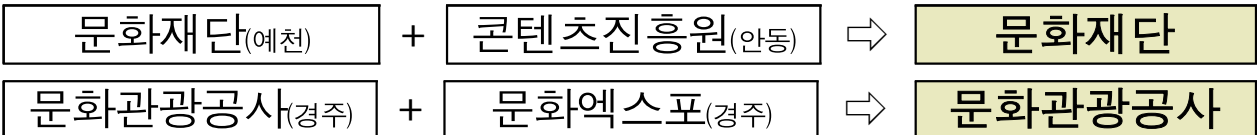
구분	기관명	직위	성명	임기	비고	
출 연 기 관	재 단 법 인	문화재단	대표이사	구 윤 철	2023.02.06.~2026.02.05	문화예술과
		문화엑스포	대표이사	(공 석)		문화산업과
		환경연수원	원 장	(공 석)		환경정책과
		환동해산업연구원	원 장	전 강 원	2021.05.01~2024.04.30	독도해양 정책과
		행복재단	대표이사	이 욱 열	2020.11.26~2023.11.25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개발원	원 장	하 금 숙	2021.04.14~2024.04.13	여성아동 정책관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김 치 영	2021.01.01~2023.12.31	여성아동 정책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 장	(공 석)		교육협력과
		독도재단	사무총장	유 수 호	2022.04.01~2025.03.31	독도해양 정책과
		경상북도농식품 유통교육진흥원	원 장	정 우 석	2023.05.17.~2026.05.16	농식품 유통과
		새마을재단	대표이사	이 승 중	2022.04.13~2025.04.12	새마을 봉사과
		독립운동기념관	관 장	정 진 영	2020.06.19~2023.06.18	사회복지과
보 조 기 관	사 단 법 인	교통문화연수원	원 장	박 수 형	2023.02.01~2026.01.31	교통정책과
		종합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윤 난 숙	2022.03.01~2025.02.28	새마을 봉사과
	단체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전 중 근	2020.09.22~2023.09.21	체육진흥과

I 추진배경 및 방향

- 완전한 지방시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분야별 발전 선도
- 「1개 분야 1개 재단」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28개 기관(출자2, 출연23, 보조3)
-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 고용 승계
- 직무·성과 중심으로 인사·보수·조직 관리체계 개편

II 추진현황

- **(문화)** 문화재단, 문화관광공사 중심으로 각각 통합



⇒ 조례 의결(2월), 통합안 설계(3~4월), 통합기관 출범(7.1.)

- **(복지)** 청소년육성재단을 행복재단 내 본부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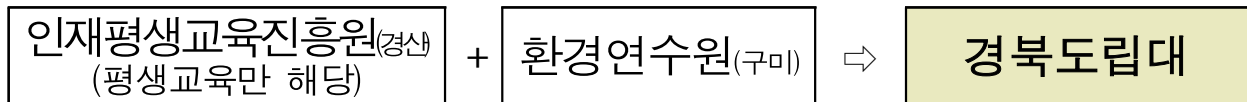


⇒ 의견수렴 및 검토(3~5월), 조례 개정 추진(6월), 통합완료(12월)

- **(호국)** 독립운동기념관 기능 확대 등 활성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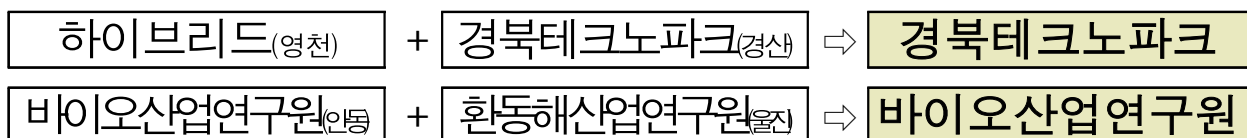
- 청송 향일의병기념공원, 경주 통일전 운영

- **(교육)** 경북도립대학교 내 부속기관화



⇒ 대학간(도립대+안동대) 통합 계획과 연계 '중장기 추진' 결정

- **(산업)** TP 중심 통합, 바이오 분야 통합



⇒ 관계관 협의 및 통합안 마련 등(6~8월), 아시회 등(9~11월), 통합완료(12월)